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3조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각 특수대학원은 제4호의 요건을, 일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과 동서의학대학원은 제2호의 요건을, 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대학원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 경희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2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3. 성적 증명서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5.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 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본 내규 제6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

제67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8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신청, 게재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 ③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게재 완료 후 30일 이내 해당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별쇄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제2항, 제3항과 학과 내규를 따른다.
- ⑤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제2항 내지 제3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 ⑦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